



‘초고속심사 1호 특허’ 19일 만에 탄생

- LG에너지솔루션 ‘첨단기술 제1호’, (주)해천케미칼 ‘수출촉진 제1호’ 등록 -
-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 개최 -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25.10.23.)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25.11.11.)됐다. (주)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5.11.11.)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25.12.2.)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6.(화) 15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시행(‘25.10.15.)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초고속심사 :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전체 평균 : 16.1개월(‘24년), 초고속심사 : 1개월)하여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이번 행사는 그간 초고속심사를 이용해 온 기업들을 초청하여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여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주)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이 신청되어(‘25.12.10.자 기준),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등록전 기준)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준호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이용혁 (042-481-8243)

- ☐ (**NEW** 초고속심사) 다른 우선심사 신청 출원보다 빠른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초고속심사 도입(고시 제4조제1항제2항)

< 초고속심사 대상 >

< 시범실시 >

① 수출촉진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다목)	☞ 연간 2,000건 및 대표출원인 3건 으로 제한
② 첨단기술 + 조약우선권기초출원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아목)	☞ 연간 2,000건으로 제한

* '25년의 경우 3개월 시행(10월~12월)을 고려하여 각각 연간 500건으로 운영

- ☐ (**신청방법**) 일반 우선심사와 신청방법이 구분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 (**의사표시**) 서식에 우선심사신청인이 **“초고속심사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만 초고속심사로 진행 가능
- ☐ (**지원내용**) 우선심사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심사결과 제공

심사관 소요기간	심사관 우선심사 착수기간	심사관 중간서류 처리기한	합계
일반 우선심사	2개월 ^{의 말일}	4개월 ^{의 말일}	6개월 ^{+α}
NEW 초고속심사	1개월 ^(선행기술조사 납품 포함)	1개월	2개월

* 출원인 대응기간인 의견서제출기간(4개월)은 기간단축신청을 통해 단축가능

※ 기타 소요기간

기타 소요기간	(분류기관) 분류부여	(심사관) 우선심사결정	(심사관) 선행기술조사의뢰	(조사기관) 보고서 납품
일반 우선심사	7일 이내	7일 이내	우선심사결정 후 15일 이내	3주 이내
NEW 초고속심사	7일 이내	7일 이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 당일	5근무일 이내

- ☐ (**수수료**) 일반 우선심사와 동일(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